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면서 연구위원 5명(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고, 시·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연구위원) ① 경찰대학에 치안 이론·정책, 경찰 교육훈련 및 국내외 치안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 중 5명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나머지 1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경찰학 분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5명”을 “621명”으로, “15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1명”을 “517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81”을 “134,40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31”을 “129,948”로 하며, 치안감 “18”을 “23”으로, 총경 이하 “129,825”를 “129,837”로 하며, 일반직 계 “4,356”을 “4,360”으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4,335”를 “4,340”으로, 전문경력관 “18”을 “17”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치안정책 연구기능 강화(경찰대학)	5명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6조의2(연구위원) ① 경찰대학에 치안 이론·정책, 경찰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치안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 중 5명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나머지 1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경찰학 분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의 정원은 <u>625명</u>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u>15명</u>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u>621명</u>----- ----- <u>18명</u>----- ----- ----- ----- -----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u>521명</u>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 ----- ----- ----- ----- ----- ----- ----- <u>517명</u>-----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381</u>	<u>134,402</u>	+21
경찰공무원 계	<u>129,931</u>	<u>129,948</u>	+17
·	·	·	
치안감	<u>18</u>	<u>23</u>	+5
·	·	·	
총경 이하	<u>129,825</u>	<u>129,837</u>	+12
·	·	·	
·	·	·	
일반직 계	<u>4,356</u>	<u>4,360</u>	+4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35</u>	<u>4,340</u>	+5
전문경력관	<u>18</u>	<u>17</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8